

# 직 제 규정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전부개정 2011.09.01. 규정 제174호  
개정 2011.12.28. 규정 제183호  
개정 2012.03.07. 규정 제193호  
개정 2012.12.24. 규정 제208호  
개정 2013.12.10. 규정 제227호  
개정 2014.05.26. 규정 제239호  
개정 2014.10.08. 규정 제245호  
개정 2014.12.24. 규정 제252호  
개정 2015.05.19. 규정 제261호  
개정 2015.11.26. 규정 제281호  
개정 2016.07.27. 규정 제296호  
개정 2016.12.22. 규정 제306호  
개정 2017.09.18. 규정 제325호  
개정 2017.12.26. 규정 제339호  
개정 2018.01.24. 규정 제341호  
개정 2018.12.23. 규정 제361호  
개정 2019.06.26. 규정 제373호  
개정 2019.12.20. 규정 제386호  
개정 2020.06.29. 규정 제400호  
개정 2020.12.24. 규정 제417호  
개정 2021.12.24. 규정 제444호  
개정 2022.12.26. 규정 제466호  
개정 2023.10.23. 규정 제491호  
개정 2023.12.27. 규정 제498호  
개정 2024.06.04. 규정 제507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직과 기능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정원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임원의 직무)**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심사평가원을 대표하며,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에 대해 원장을 보좌하며, 그 관장업무에 따라 기획상임이사·보험수가상임이사 및 심사평가상임이사로 한다. <개정 2011.12.28., 2012.12.24., 2013.12.10., 2014.12.24., 2015.11.26., 2016.7.27., 2016.12.22., 2017.12.26., 2018.12.23., 2019.12.20., 2020.12.24., 2023.10.23., 2023.12.27.>

1. 기획상임이사: 기획조정실·안전경영실·인재경영실·홍보실·고객지원실·ICT 전략실 및 정보운영실의 업무
  2. 보험수가상임이사: 급여전략실·급여관리실·약제관리실·포괄수가실·DUR관리실·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라 한다) 및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이하 “자보심사센터”라 한다)의 업무
  3. 심사평가상임이사: 심사전략실·심사운영실·심사기준실·심사관리실·평가운영실·평가관리실·의료자원실·의료급여실·조사운영실 및 급여조사실의 업무
- ③ 감사는 심사평가원의 회계와 업무 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감사실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직원)** ① 직원의 직종은 행정직·심사직·전산직·연구직·전문직 및 운영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24., 2019.12.20.>

② 행정직, 심사직 및 전산직 직원의 직급은 1급·2급·3급·4급 이하로 한다. 다만, 2급 이상은 직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각 직급의 명칭은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2.3.7., 2013.12.10.>

③ 연구직 직원은 소장·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 및 주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④ 전문직 직원은 심사위원·자동차보험심사위원 및 자동차보험재정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2.12.24., 2016.12.22.>, <개정 2021.12.24.>

⑤ 운영직 직원의 업무 분야 및 직무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20.>

## 제2장 기구 및 정원

**제5조(조직)** 심사평가원의 조직은 본원과 지역별 분사무소(이하 “본부”라 한다)로 구분하며, 그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0.23.>

**제6조(본원)** ① 본원에는 기획조정실·안전경영실·인재경영실·홍보실·고객지원실·ICT전략실·정보운영실·급여전략실·급여관리실·약제관리실·포괄수가실·DUR관리실·의약품정보센터·자보심사센터·심사전략실·심사운영실·심사기준실·심사관리실·평가운영실·평가관리실·의료자원실·의료급여실·조사운영실·급여조사실·지불제도개발실·공공수가정책실·심사평가정책연구소 및 감사실을 둔다. <개정 2011.12.28., 2012.12.24., 2013.12.10., 2014.12.24., 2015.11.26., 2016.7.27., 2016.12.22., 2017.12.26., 2018.12.23., 2019.12.20., 2020.12.24., 2023.12.27.>

②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지불제도개발실, 공공수가정책실은 원장 직속으로 하고, 심사평가정책연구소에 심사평가연구실, 빅데이터실을 둔다. <개정 2013.12.10., 2014.12.24., 2015.11.26. 2018.12.23., 2020.12.24., 2021.12.24., 2022.12.26., 2023.12.27.>

③ 감사실은 감사 직속으로 한다. <개정 2012.12.24., 2014.12.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실(의약품정보센터 및 자보심사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하부조직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4., 2018.12.23., 2020.12.24., 2022.12.26.>

⑤ 「정관」 제39조 및 제41조의2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하부조직의 정원, 업무분장 등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27., 2018.12.23., 2020.12.24.>

⑥ 「정관」 제41조의2에 따른 업무기능별 전문군은 심사·평가·수가·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6.7.27.>

**제7조(본부)** ① 본부의 명칭, 위치 및 관할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본부에 두는 하부조직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3.10.23.]

**제8조(정원)** ① 심사평가원에 두는 임직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2.10., 2019.6.26.>

② 직급별·직종별 정원 및 본원·본부와 그 하부조직의 정원은 별표 3의 범위 안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3.>

**제9조(정원운용의 특례)** 원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급 이하의 정원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 제3장 직위 및 직무

**제10조(직위별 보직기준)** ① 본원의 각 실의 장은 실장으로 하고(센터의 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 각 본부의 장은 본부장으로 하며 1급으로 보한다. 다만, 심사평가정책연구소의 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소장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4., 2021.12.24., 2023.12.27.>

② 본원 및 본부에 두는 부의 장은 부장으로 하며 2급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종류·성질을 고려하거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장과 본부장을 2급으로, 부장을 3급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위와 직급을 달리하는 자의 보직명칭은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실·본부 또는 부의 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10.23.]

**제11조(개방형 직위)** ① 원장은 직무수행의 효율성 또는 조직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평가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 2급 이상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해당 개방형 직위의 직무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2016.12.22.>

③ 개방형 직위의 운영범위, 임용자격기준, 임용기간 및 기타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업무분장)** ① 본원의 각 실 및 본부의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0.23.>

② 본원의 각 실 및 본부의 하부조직에 대한 업무분장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임원칙)** 원장은 별표 3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 내에서 그 하위 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직무)** ① 연구소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별표 4에 따른 분장 업무(이하 “소관 업무”라 한다)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본원의 각 실장은 임원을 보좌하고,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본부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10.23.>

④ 심사위원은 「정관」 제35조의 사업별로 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직위이외의 각 직위의 자는 상위자를 보좌하고 소관 업무를 관장 또는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⑥ 삭제 <2023.12.27.>

**제15조(직무대리)** ① 임원과 연구소장·실장·본부장 및 부장(이하 “연구소장 등”이라 한다)이 결원·출장·휴가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인사권자가 따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4., 2023.10.23.>

1. 원장의 직무는 제3조제2항의 순서에 따른 상임이사가 대리한다.
2. 상임이사의 직무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실장이, 감사의 직무는 감사실장이 각각 대리한다.
3. 연구소장 등의 직무는 하부조직의 소속 직원 중 직제의 순서에 따른 선임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사권자가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제16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직위의 직무는 이 규정과 시행세칙 및 「위임전결세칙」에서 정한 직무권한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직원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4.12.24.>

② 심사평가원의 제반업무 처리에 관한 전결 수준과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위임전결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4.>

## 제4장 보칙

**제17조(임시조직의 설치 등)** ① 원장은 특정업무의 수행 또는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조직을 두거나,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직 및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수탁사업 조직의 설치·운영 등)** ① 원장은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른 수탁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조직(기구, 정원 및 업무분장을 포함한다)을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19조(특명사항의 처리)**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항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제20조(비정규직)** 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촉탁·일용직 등 직제 이외의 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2.24.>

**제21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규정 제174호, 2011.9.1.>**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83호, 2011.12.28.>**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93호, 2012.3.7.>**

이 규정은 201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08호, 2012.12.24.>**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27호, 2013.12.10.>**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39호, 2014.5.26.>**

이 규정은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45호, 2014.10.8.>**

이 규정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52호, 2014.12.24.>**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61호, 2015.5.19.>**

이 규정은 201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81호, 2015.11.26.>**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및 별표2의 지원 신설과 관할지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신설 지원의 설립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96호, 2016.7.27.>**

이 규정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06호, 2016.12.22.>**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 별표 4 II. 지원의 분장업무 중 종합병원 관련 사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중 인천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2, 별표 4 I. 본원의 심사운영실과 II. 지원의 분장업무 중 한방병원 관련 사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 I. 본원의 심사운영실과 II. 지원의 분장업무 중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관련 사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별표 4 I. 본원의 심사실 분장업무 중 한방병원 관련 사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별표 4 I. 본원의 심사실 분장업무 중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관련 사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인천지원 설립에 관한 특례)** 인천지원은 2017년 7월 1일 부로 설립한다.

**부칙<규정 제325호, 2017.9.18.>**

이 규정은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39호, 2017.12.26.>**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41호, 2018.1.24.>**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61호, 2018.12.23.>**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73호, 2019.6.26.>**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86호, 2019.12.20.>**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00호, 2020.6.29.>**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17호, 2020.12.24.>**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44호, 2021.12.24.>**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66호, 2022.12.26.>**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91호, 2023.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 중 “강원도”를 개정하는 부분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498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원본부·제주본부 설립에 관한 특례) ①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강원 본부·제주 본부에 관한 사항과 별표 2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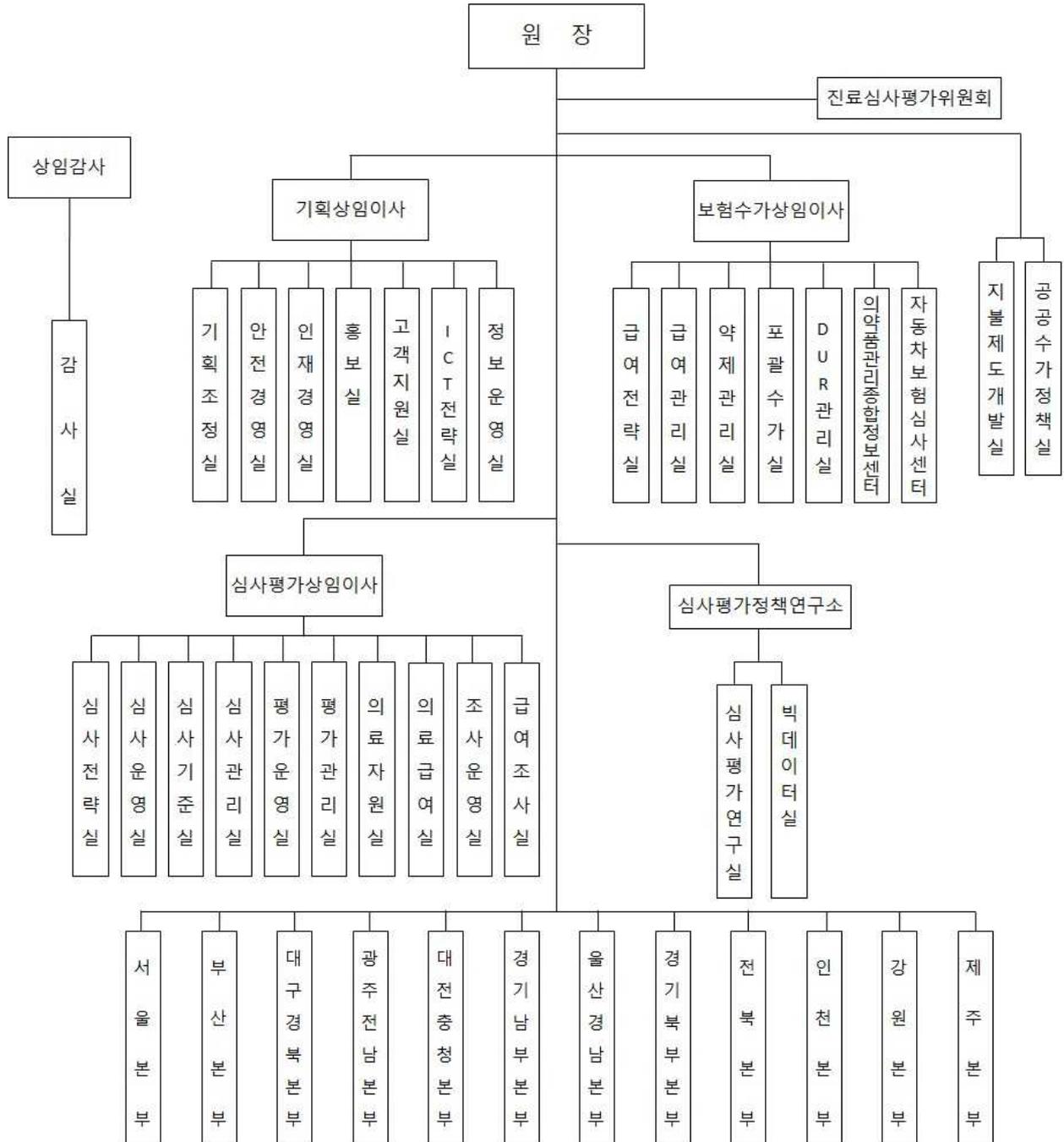
②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까지 별표 1의 경기북부분부는 경기북부강원본부, 부산본부는 부산제주본부로 한다.

**부칙<규정 제507호, 2024.6.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 중 “전라북도”를 개정하는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 기구 표(제5조 관련)



본부의 명칭, 위치 및 관할지역(제7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지 역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충청본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남부분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남부) <sup>주1)</sup>
울산경남본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북부분부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 <sup>주2)</sup>
전북본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1)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주2)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별표 3] <개정 2024.6.4.>

정 원 표(제8조 관련)

(단위: 명)

구	분	정 원
총	계	3,898
소	계	5
원	장	1
감	사	1
상	이	3
소	계	3,229
1	급	37
2	급	130
3	급	473
4	이	2,589
소	계	151
소	장	1
선	임	1
선	임	1
연	구	8
연	구	1
부	연	44
주	임	95
소	계	58
심	사	55
자	동	2
자	동	1
소	계	455
운	영	455

## 업 무 분 장(제12조 관련)

### I. 본원

실	분 장 업 무
기획조정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관운영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li> <li>2.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운용에 관한 사항</li> <li>3. 직제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기관이 수행해야 할 필수업무(「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 업무 등)에 대한 부서 지정 및 업무부여에 관한 사항</li> <li>5. 이사회 및 주간·월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6. 경영공시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li> <li>7. 기획상임이사 소관 부서 관련 주요사항 총괄에 관한 사항</li> <li>8. 미래발전 기획 및 경영혁신 등에 관한 사항</li> <li>9.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li> <li>10. 공공기관 혁신 관련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li> <li>11. 신규기능 발굴 및 업무·조직문화 개선 등에 관한 사항</li> <li>12. 윤리경영·인권경영 등 지속가능경영 총괄에 관한 사항</li> <li>13. 전사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li> <li>14. 성과관리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li> <li>15. 국회·정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li> <li>16. 법규 및 소송에 관한 사항</li> </ol>
안전경영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영지원(기록물관리, 문서의 접수·배부·발송, 대·내외 행사 등)에 관한 사항</li> <li>2. 임원업무수행 보좌에 관한 사항</li> <li>3. 안전 중심 경영 추진 및 총괄에 관한 사항</li> <li>4. 회계 및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li> <li>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재난, 비상계획 및 전시업무수행 등 총괄에 관한 사항</li> <li>6. 사옥(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li> <li>7. 원문정보 공개 업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8. 물품 구매·공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li> </ol>

실	분 장 업 무
인재경영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사·교육제도 기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li>2. 직원 교육(학습) 및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li> <li>3. 대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li> <li>4. 직원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5. 지식경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6. 채용, 승진, 전보, 근무성적평가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li> <li>7. 포상, 징계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li> <li>8. 임직원 급여 및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li> <li>9. 복리후생 및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li> <li>10. 가족친화경영에 관한 사항</li> </ol>
홍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관 종합홍보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li> <li>2. 홍보자료 제작 및 정기간행물 발간, 홍보매체(뉴미디어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li> <li>3.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사회공헌 업무에 관한 사항</li> <li>4. 동반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5. 대외 소통·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li> <li>6. 기관 여론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에 관한 사항</li> </ol>
고객지원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객만족경영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고객가치 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li> <li>3. 고객서비스 교육 및 모니터링 운영에 관한 사항</li> <li>4. 고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li> <li>5. 고객센터 상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li> <li>6. 민원·국민제안·청원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li> <li>7.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li> <li>8. 홈페이지·건강e음(앱) 콘텐츠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li> <li>9. 전자자료관리(웹팩스, 스캔), SMS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0.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긴급지원 포함) 처리·환불 및 관련 이의 신청·사후관리에 관한 사항</li> </ol>
ICT전략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ICT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ICT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인력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li> <li>3. 전자정부 성과 관리(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성과 측정 등)에 관한 사항</li> </ol>

실	분 장 업 무
	4. ICT인재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5. 신기술 검토 등 ICT 혁신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관련 정책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7.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전환 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시스템(ICT) 관리·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9. 데이터, 웹 개발 표준화·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2.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운영실	1. ICT 기반 업무 인프라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EMR 기반의 진료정보 수집,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진료비 청구·심사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요양기관업무포털 개발·운영 및 요양기관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진료비 청구 관련 소프트웨어 인증에 관한 사항 6. 업무 S/W 개발·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대내·외 정보연계 개발·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심사업무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계획(심사 관련 정보통신망 운영 및 정보 관리)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9. 모바일서비스(웹, 앱, 전자고지 등) 기획 및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10. 업무처리자동화(RPA) 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급여전략실	1. 국정과제 등 건강보험 급여 정책·전략 기획 등 총괄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등 재정지출정책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3. 건강보험 종합계획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급여정보분석(건강보험 주요정책과제 등) 운영 및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험수가상임이사 소관 부서 관련 주요사항 총괄에 관한 사항 7. 의료행위·치료재료의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의료행위·치료재료 선별급여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9.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실	분 장 업 무
	10. 비급여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11. 비급여 표준화 및 재평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급여관리실	1.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관련 결정 및 조정(의료행위는 신청에 한함)에 관한 사항 2. 전문평가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신규등재 의료행위 최초 급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치료재료 가격 및 산정기준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5. 치료재료 코드표준화, 구입목록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6. 의료행위·치료재료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치료재료 허가 신고 또는 인정 범위 초과 사용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8. 요양급여·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건 처리에 관한 사항 9. 혁신의료기술 등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예비코드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혁신 의료기술 관련 국제 협력, 등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약제관리실	1. 약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2. 약제비 분석 및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3. 필수 약제의 급여화, 재평가 및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제 급여기준 전면개선에 관한 사항 5. 약제 급여기준과 심사지침의 제정·공고·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약제 급여기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7. 요양급여대상 약제 관리·분석 등에 관한 사항 8. 약제의 사후관리 및 관련 이의신청·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약제 급여의 결정·조정에 관한 사항 10.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11. 퇴장방지 의약품 및 저가약 대체조제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12. 약제 필수·선별급여 관련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험분담제도의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조건부급여 등재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 및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16. 약제 사후평가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실	분 장 업 무
포괄수가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포괄수가제(이하 신포괄수가제 포함) 사업운영 및 정책지원 등 전반에 관한 사항</li> <li>2. 포괄수가제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li> <li>3. 포괄수가제 심사기준(진단코딩 포함)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포괄수가 등 개발 및 지침 설정·개선·관리에 관한 사항</li> <li>5. 포괄수가제 모니터링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li> <li>6. 포괄수가 진료비 심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7. 포괄수가 청구·정산시스템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8.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9. 포괄수가 관련 이의신청·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li> <li>10.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치과, 한의, 재활)</li> <li>11. 질병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2. 환자·질병분류체계 전산시스템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3. 환자·질병분류체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4. ICD-11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li> </ol>
DUR관리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DUR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DUR 운영기준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li> <li>3. DUR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li> <li>4. DUR 적용대상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li> <li>5. DUR 점검결과 모니터링, 효과분석 및 환류 등에 관한 사항</li> <li>6. DUR 기반 의약품 부작용 예방 및 정보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li> <li>7. DUR을 활용한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안전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li> <li>8. DUR 점검결과 평가지표 활용에 관한 사항</li> <li>9. DUR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li> <li>10. DUR 기준 및 시스템 운영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li> </ol>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약품유통정보 수집, 조사, 가공·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li> <li>2. 의약품유통정보 정보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3. 의약품유통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4. 의약품 표준코드(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의 관리에 관한 사항</li> <li>5. 의약품유통정보 표준화, 분류에 관한 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6. 의약품 공급내역 등의 제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 의약품 유통정보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ol>

실	분 장 업 무
	7. 의약품 유통실태 현황조사 및 유통 선진화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8. 약제 공급금액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인 및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10. 의약품유통정보 및 약제공급금액 조사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에 관한 사항 11. 의약품·의료기기 지출 보고 관련 업무 및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12. 수급불안정 의약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자동차보험 심사센터	1.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 기획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운영 및 개선,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4.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준 및 청구방법 개발에 관한 사항 5.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6. 자동차보험 심사수수료 및 계약관리, 위탁효과 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7.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관련 이의제기·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지침 공고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에 관한 사항
심사전략실	1. 요양급여비용 심사·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심사제도 개선 총괄에 관한 사항 3. 심사업무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계획(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심사 관련 제도 개선, 심사품질 향상, 적정 심사방법 및 분석기법 등의 적용과 개발 등)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4.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심사평가 연계·통합에 관한 사항 6. 심사평가상임이사 소관 부서 관련 주요사항 총괄에 관한 사항 7. 심사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기획 및 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8. 본원·본부 심사결정 전·후 편차 모니터링 및 피드백에 관한 사항 9. 진료비지표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0. 가치기반 심사평가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11. 분석심사(주제별, 자율형 등)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12. 전문심사위원회(SRC·PRC) 구성·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실	분 장 업 무
	13. 분석심사 대상별 의학적 근거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분석심사 로드맵 수립·관리 및 분석모형 개발에 관한 사항 15. 분석심사 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16. 심사평가종합컨설팅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17. 데이터기반 경향관리제 개발·운영 등 총괄에 관한 사항 18. 심사연계활용 정보산출 및 분석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심사운영실	1. 본원·본부 심사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 전문심사대상 선정기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분석심사(주제별, 자율형 등) 수행에 관한 사항 4.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본원·본부 심사관련 실적 분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6. 상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포함)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재심사 조정청구에 관한 사항 7. 요양기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선별집중심사 관리에 관한 사항 9. 심사업무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계획(전문심사 및 선별집중심사 등)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실	1. 급여기준 관련 정책지원 및 심사기준 총괄(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에 관한 사항 2. 심사기준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여기준(의료행위, 치료재료) 개선 검토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정책지원 및 내·외부 건의사항) 4. 심사지침(의료행위, 치료재료) 제정·공고·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5. 심사기준 관리·조회 시스템 운영 및 개선 총괄 등에 관한 사항 6. 진료비 청구방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청구오류 예방사업 기획, 분석,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8. 본원·본부 전산심사 기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심사업무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계획(심사기준 상시 정비체계 운영 등)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 관련 급여 기준에 관한 사항

실	분 장 업 무
심사관리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 사후관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상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포함)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li> <li>3. 상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포함)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처분청의 업무에 관한 사항</li> <li>4. 이의신청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li> <li>5. 행정기관(경찰, 검찰, 법원 등)의 입원일수 적정여부 심의 의뢰 및 수진자 진료정보 요청 등 업무에 관한 사항</li> <li>6. 심사 사후관리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li> </ol>
평가운영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가 발전에 관한 기획 및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li> <li>2. 의료평가조정위원회 및 의료평가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적정성 평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수행 체계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li> <li>4. 적정성 평가 연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5. 적정성 평가지표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6. 항목별 적정성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에 관한 사항</li> <li>7. 항목별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및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li> <li>8. 항목별 적정성 평가 이의신청(심판청구 포함)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li> <li>9. 적정성 평가 교육·홍보·정보제공·행사 등에 관한 사항</li> <li>10. 적정성 평가의 심사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li> <li>11. 기타 정책과 연계한 적정성 평가 수행에 관한 사항</li> </ol>
평가관리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정성 평가 결과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li> <li>2. 의료기관 질 향상 지원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li> <li>3. 적정성 평가 교육·홍보·정보제공·행사 등에 관한 사항</li> <li>4. 환자경험, 입원일수, 약제급여 등 평가 수행에 관한 사항</li> <li>5. 적정성 평가 신규항목 발굴 및 예비평가 수행에 관한 사항</li> <li>6. 평가정보뱅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li> <li>7. 평가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li> <li>8.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li> <li>9.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li> </ol>

실	분 장 업 무
	10. 입원시 상병 운영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11.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적정성 평가의 심사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14. 기타 정책과 연계한 평가 모형 개발에 관한 사항
의료자원실	1. 요양기관 현황관리 업무총괄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 인력·시설·장비(이하 “의료자원”이라 한다) 신고 및 변경,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의료자원 현지확인에 관한 사항 5. 의료자원 DB 구축·유지 및 통계분석 등 의료자원 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요양기관 통보 신고서에 따른 입원료 등 차등제 및 요양기관·의료인 등의 행정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7.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난임시술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관리, 아동분만병원 선정운영,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 사업의 대상·기준 및 방법 개발, 조사에 관한 사항 9.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를 관한 사항 10. 감염병 등 국가재난 관련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관련 계획수립·운영·정책지원 등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13.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관련 연계 시스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4.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관련 모니터링 및 현지확인에 관한 사항 15.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실	1. 의료급여 심사기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업무 및 소외계층 진료비 심사에 관한 사항 3. 보훈환자 위탁진료비 심사 등에 관한 사항 4.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급여비용 심사 및 재심사 조정청구에 관한 사항 5. 요양기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

실	분 장 업 무
조사운영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지조사 기본 계획 수립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li> <li>2.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li> <li>3. 현지조사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현지조사기관에 대한 결과처리, 이의신청 검토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li> <li>5. 현지조사기관 이행실태조사, 고발 및 행정소송 지원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li> <li>6. 자율점검제도 계획 수립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li> <li>7. 현지조사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li> <li>8. 현지조사 관련 홍보·행사 등에 관한 사항</li> </ol>
급여조사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지조사(건강보험·의료급여 및 서면조사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지원 계획 수립 및 수행 총괄에 관한 사항</li> <li>2. 현지조사 결과 분석 및 제도개선 등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현지조사기관 정산심사에 관한 사항</li> <li>4. 현지조사 관련 교육·정보제공·대외기관지원 등에 관한 사항</li> </ol>
심사평가연구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 조직·인력 등 총괄에 관한 사항</li> <li>2. 연구기획·조정·평가 및 연구 인프라 구축 등 연구개발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li> <li>3.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비상근 직원연구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li> <li>4. 심사평가체계 개편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li> <li>5.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li> <li>6.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li> <li>7. 의료의 질 평가 연구에 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li> <li>8. 급여 정책 등 의료보장 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li> <li>9. 의료시설·장비·인력 등 연구에 관한 사항</li> <li>10. 보건의료 정보 활용 및 제도화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li> <li>11. 감염병 관련 정책지원 연구에 관한 사항</li> <li>12.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가격, 등재, 사용량 등 연구에 관한 사항</li> <li>13. DUR·항생제 적정 사용 등 의약품 안전 연구에 관한 사항</li> <li>14. 선별급여제도 등 급여정책 효과평가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li> <li>15.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보장을 위한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li> <li>16. RWE 기반 의약품 관리 모형 개발에 관한 사항</li> <li>17. OECD 등 국제협력 및 보건통계 생산·개발에 관한 사항</li> </ol>

실	분 장 업 무
	18. HIRA Research 및 심평포럼 운영 등 연구결과 활용·확산에 관한 사항 19. 도서자료관리(도서관) 및 전자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제기구 등 유관기관과의 국제협력 및 기관 업무 관련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1.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연구범위 확장에 관한 사항 22. 고가약 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3. 고가약 재평가(효과 및 비용효과성)에 관한 사항
빅데이터실	1. 빅데이터 및 통계 관리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2.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관련 정부정책 및 평가대응에 관한 사항 5.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제공서비스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및 결합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에 관한 사항 8. 빅데이터 가치 창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10.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동데이터모델(CDM) 개방에 관한 사항 12. 보건의료 통계의 생산 및 제공·공개에 관한 사항 13.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업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급여정보분석 인프라 운영 및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15. 급여정보분석시스템 기획,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6. DW 시스템 기획,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지불제도개발실	1. 건강보험혁신센터 운영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 지불제도 개선·개발 및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불제도 평가모형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필수의료 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6. 대안형 지불제도 관련 시범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의료이용(대안형 지불제도 등) 동향·비용 및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8. 재택·방문·일차의료 관련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실	분 장 업 무
	9. 일반 질 평가 수행에 관한 사항 10.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수가정책실	1.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 상대가치 개편 연구개발·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료행위 수가개발 및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5. 의료행위 급여목록에 대한 직권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제5호 관련 신규 수가에 대한 최초 급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7. 요양병원·호스피스·연명의료·재활의료기관 수가 개선 및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8. 시범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감사실	1. 업무감사 및 수감업무에 관한 사항 2. 공직기강 확립 등 사정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청렴도 평가에 관한 사항 4. 경영공시 점검·확인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II. 본부

분 부	분 장 업 무
각 본부	1. 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2. 종합병원 이하(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중별가산율 10%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와 재심사 조정청구, 심사·평가 종합컨설팅, 선별집중심사 실행에 관한 사항 3.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요양기관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4.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심사평가 수행에 관한 사항 5. 본부심사와 관련한 이의신청 처리 및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 처리, 심판청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분석심사(주제별, 자율형 등) 수행에 관한 사항 7. 지역분과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개 권역 주제별 대표본부)

분 부	분 장 업 무
	9. 본부 전산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0. 심사 역량 강화 교육(심사 기준·제도개선 포함) 총괄에 관한 사항(서울본부) 11. 출생통보 현지확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부 운영 전반 및 본원에서 위탁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